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36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36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203155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곽상현, 김철만, 김선경, 황인용, 최윤아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태한, 주옥

판결 선고 2021. 12. 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2031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시적묵시적 약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최소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시점부터는 약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 제기 시점부터 피고가 약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피고가 약의의 수익자가 된 시점 및 민법 제7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현존이익에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예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현존이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